

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 출 일 : 2026. 8. 31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기존 근거 규정인 「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」 제15조 (소위원회) 관련 내용이 조례 전부개정(2026. 5. 15.)으로 삭제됨에 따라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

2. 주요내용

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49조의3 제4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 -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 -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 - 정기적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3. 참고사항

- 부서협의결과
 - 1) 협의기간 : 2026. 5. 6. ~ 2026. 5. 19.
 - 2) 협의결과
 -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입법예고 결과
 - 1) 예고기간 : 2026. 5. 28. ~ 2026. 6. 17.(20일)
 - 2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30조에 따라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
1.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등 일반 수요자
2.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
3. 수도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
4. 그 밖에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4조(임기)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

는 수도과장으로 한다.

제8조(수당) 시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.

③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·자문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「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정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7조(수당) : 위원 회의 수당 지급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 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 -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$100,000\text{원} \times 12\text{명} \times 2\text{회} = 2,400\text{천원}$

4. 작성자

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장 김춘

붙임2 규제심사 결과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(수도과장)

(경유)

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(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)

1.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-8851(2026. 5. 7.)호와 관련됩니다.
2. 「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정(안)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, 해당 제정안은 우리 시 소관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,
3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상 **행정규제**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, 「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**규제심사 대상이 아님**을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(행정규제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(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) 끝.

남 양 주 시 장



주무관	조영기	규제개혁팀장	안재현	의회법무과장	전권 2026. 5. 7. 이봉규
협조자					
시행	의회법무과-5728	(2026. 5. 7.)	접수	수도과-8882	(2026. 5. 7.)
우	12232	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의회법무과 (금곡동)	/ http://www.nyj.go.kr		
전화번호	031-590-7320	팩스번호	031-590-2900	/ hqj1235@korea.kr	/ 비공개(5)

- 청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-

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(수도과장)
(경유)

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(2026-26)

수도과-8948(2026. 5. 8.)호와 관련하여 「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
조례」 제정(안)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- 주요평가내용 :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
- 평 가 결 과 : **원안동의**

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, 끝.

남 양 주 시 장



주무관

송호원

청렴윤리담당

이정주

감사관

전결 2026. 5. 8.

문경석

협조자

시행 감사관-5297

(2026. 5. 8.)

접수 수도과-8995

(2026. 5. 8.)
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신관 3층 감사관 (금곡동)

/ <http://www.nyj.go.kr>

전화번호 031-590-4719

팩스번호 031-590-2079

/ rims@korea.kr

/ 비공개(5)

- 청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-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관리번호	2026-남양주-26		
자치법규명	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		
평가 담당부서	감사관	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	행정7급 송호림
입안부서	수도과	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	환경8급 김서인
평가결과 통지일	2026. 5. 8.		
통보내역	원 안 동 의		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조 치 사 항	
-	-	-	

2026년 5월 8일

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
(담당자 / 연락처 : 송호림 / 031-590-4719)

수도과장 귀하

붙임4 성별영향평가 결과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(수도과장)

(경유)

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(2026A경기남양028)

1. 수도과-9690(2026. 5. 18.) 호와 관련입니다.
2. 귀 부서에서 제출한 「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」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.

붙임 검토의견 통보서(2026A경기남양028) 1부. 끝.

남 양 주 시 장 인



주무관 **이연희** 여성정책담당장 **홍주희** 대결 2026. 5. 18. 여성아동과장 전결
협조자
시행 여성아동과-15941 (2026. 5. 18.) 접수 수도과-9742 (2026. 5. 19.)
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별관4층 여성아동과 (금곡동) / <http://www.nyj.go.kr>
전화번호 031-590-3965 팩스번호 031-590-2269 / yhlee0127@korea.kr / 비공개(5)

- 청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-

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				
관리번호	2026A경기남양028			
정 책 명	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경기도 남양주시		
	부서명	수도과		
	담당자명	김서인	전화번호	031-590-4628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6년 5월 18일	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수도과)	○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	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 책임관)	☒ 개선사항 없음 ☐ 자체개선안 동의 ☐ 개선의견			
	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 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	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			
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 다.				
2026년 05월 18일				
남양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				
(담당자/연락번호 : 이연희/031-590-3965)				
수도과장 귀하				

붙임5 입법예고 결과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

1. 수도과-10080(2026. 5. 22.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 - 가. 입법예고 제명: 「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
 - 나. 입법예고 기간: 2026. 5. 28.(목) ~ 2026. 6. 17.(수) / 20일간
 - 다. 입법예고 방법: 시보,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
 - 라. 입법예고 결과: **의견 없음** / 의견제출 0건
 - 마. 향후 추진계획: 제517회 조례·규칙심의회 안건 상정(2026. 6. 29.) 등 입법절차 진행
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
주무관 **김서인**
상하수도관리 전결
센터소장

정수1팀장 **차창호**
합조사 의회법무팀장 **한지혜**
의회법무과장 **이봉규**

수도과장 **김순**

사업운영과 대결 2026. 6. 18.
과장 **전기수**

시행 수도과-11815

접수

우 1218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독포로17번길 63-102 / <http://www.nyj.go.kr>

전화번호 031-590-4628 팩스번호 031-590-2469 / ksi4664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-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-

붙임6 관련법령

☑ 「수도법」

제30조(수돗물평가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·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 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 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☑ 「수도법 시행령」

제49조의3(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수돗물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,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-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**조례**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.